

#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

발의일자	2016. 09. 23.
발 의 자	김종두의원외10명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개정 검토 의견이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조항 및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7조)

- 결산승인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는 부분 삭제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검사사항에 맞게 개정(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의 생략이 가능한 조항의 삭제를 통해 상위 법령에 부합시킴(현행 제7조제2항 삭제)

나. 결산검사 위원회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4명”으로 구체화(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시행령 제83조, 제8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재무과(경리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10. 12 ~ 10. 19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를 “제83조 및 제84조에”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를 “4명으로”로, “의회의원”을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1/3”을 “3분의 1”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승락”을 “승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거창군의”를 “거창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형제자매 인자는”을 “형제자매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회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10조 중 “위촉 기간중에서”를 “위촉기간 중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촉기간중에서”를 “위촉기간 중에서”로, “때에는”을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기간중에”를 “검사기간 중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u>제82조</u>부터 <u>제84조</u>까지의 규정에 따른 <u>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u>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83조</u> <u>및 제84조에</u> ----- <u>결산</u> <u>검사위원</u>----- ----- -----</p>
<p>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u> 한다. 이 경우 <u>의회의원은</u> 검사위원수의 <u>1/3</u>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u>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u> ----- <u>4명</u>으로 ---- <u>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은 ---- <u>3분의 1</u>을 -----.</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u>승락</u>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승낙</u>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u>당해 거창군의 상근직원을</u> 겸할 수 없다. ② 거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권자 또는 <u>형제자매 인자</u>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u>거창군의</u> ----- ② ----- ----- <u>형제자매</u>는-----</p>
<p>제6조(대표위원) ① <u>위원중에서</u> 대표위원을 <u>선출하되</u> <u>의회의 의원인</u> 위원이 된다. ② (생략) ③ 대표위원이 <u>사고가 있을때에는</u>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대표위원) ① <u>위원 중에서</u> ---- ----- <u>두되,</u> <u>의회의 의원</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u> <u>행할 수 없을 때에는</u>----- -----</p>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

[시행일 : 2017.1.1.] 제84조